『이베로아메리카(JIIS)』투고에 관한 안내

『이베로아메리카(JIIS)』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에서 발간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포르투갈 지역 전반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성과들을 수록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

본 학술지는 해당지역에 관한 연구로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문학 및 언어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 결과물을 환영합니다. 다만, 보내주실 원고는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순수 학술논문이어야 합니다. 논문은 『이베로아메리카(JIIS)』편집위원회의 검토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가 결정됩니다.

원고는 『이베로아메리카(JIIS)』원고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반드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셔서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본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소정양식의 논문투고신청서를 반드시 첨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로아메리카(JIIS)』는 연 2회(6월 30일, 12월 28일) 발간되며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발간됩니다. 단, 투고는 **연중 수시 접수**합니다.

	게재신청 및 논문제출 마감	심사결과통보 및 수정의뢰	발행일
제1호	4월 30일	5월 20일	6월 30일
제2호	10월 30일	11월 20일	12월 28일

『이베로아메리카(JIIS)』투고에 관한 기타 문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소 연락처

(우편번호)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산 55-1번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전화: 051-640-3427 팩스: 051-640-3407

◈ 게재신청 및 논문접수

ibero1@pufs.ac.kr(담당: 이순주 박사)

『이베로아메리카(JIIS)』원고작성요령

1. 논문 작성은 '흔글97'이상 혹은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로 작성하고, 사용언어는 한글, 영문,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제한합니다.

2. 논문의 분량은 원고지 기준 100매 이상 150매 이내로 제한하되, 논문 내에 수록될 그림, 표, 지도, 그래프 등은 투고자의 의도를 존중하되, 출판 시 투고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논문은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1) 논문제목(외국어 병기)
   2) 외국어요약 및 주제어(국문병기)
   3) 본문
   4) 참고문헌
   5) 논문투고일자
   6) 기고자 성명, 소속기관, 이메일주소

4. 논문 세부 작성방법
   1) 논문제목

   논문 제목은 가급적 두 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제목 밑에 부제를 달 수 있습니다. 학술경비의 지원을 받은 논문은 제목 뒤에 *표를 하고 각주에 경비지원내용과 과제번호를 기입합니다.

   예)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4-000-A00000).

   2) 논문요약 및 주제어

   글상자 안에 논문요약을 100단어 내외로 작성하고, 주제어는 5개 내외로 작성합니다. 논문요약은 국문논문일 경우 외국어요약을, 외국어 논문인 경우 다른 언어요약(예:스페인어·포르투갈어는 영어 혹은 국문)을 선택하여 사용합니

다. 주제어는 외국어와 국문으로 병기합니다.

3) 본문

목차에서 각 장은 로마자로(I, II, III ...) 각 절은 숫자로(1, 2, 3..) 구분하며 각 절 내의 하위항목은 반괄호 숫자(1) 2) 3)...)와 원문자의 숫자(①②③...)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가능한 한 추가적인 세분화를 피합니다.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국문 논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문만을 사용하되 한자, 혹은 원어표기가 필요한 경우 처음 나올 때 괄호를 사용하여 병기합니다. 단, 많이 알려진 단체명이나 국문으로 번역된 단체명이 너무 긴 경우 처음에 한국어명과 원어표기를 괄호 안에 병기한 다음 원문약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는 원음대로 표기하되 이미 우리말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그에 준할 수 있습니다.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로 표기하고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있을 경우 <표1a> <표1b> 등으로 표기합니다.

각주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① 본문에 저자명이 언급된 경우는 저자명 다음에 괄호에서 연도만 표시합니다.

예) 플로레스는(2003) 원주민 인권연구에 있어서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②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 연도를 괄호 안에 표시합니다.

예) 원주민 인권연구에 있어서 .....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Flores 2003).

③ 인용한 페이지를 밝히는 경우 괄호 안에 저자명 출판연도, 인용페이지를 표기합니다.

예) …… 중요시 되었다(김용진 1999, 1-6).

④ 두 개 이상의 다른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동일저자의 2개 이상 인용할 경우는 맨 앞에만 저자명을 기입하고 세미콜론(;)을 이용하여 표기합니다.

예) …… 주장한다(김해숙 1999, 1-6; 홍길동 2000, 3-10).

…… 강조했다(유영명, 1999; 2000).

⑤ 인용한 책 혹은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예) 2인은 (Torres and Alejandro 2004, 37), (김해숙/홍길동 2001, 23-27)

3인 이상은 (Torres et al. 2004, 26-54)

⑥ 참고문헌에 동일인이 쓴 저작이 다수 포함될 경우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참고문헌 작성 시에도 이를 유의하여 표기합니다.

예) (CEPAL 2001a, 87; Torres 2003c, 43-45)

⑦ 저자의 언급이나 보충설명 등은 각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주 속에 있는 인용논문의 처리방식은 ①에서⑥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⑧ 작품을 분석한 논문일 경우 분석 작품의 인용부분의 페이지만 표기합니다.

예) ... cuando apenas sí era licenciado.(p.235)

⑨ 작품분석 논문의 경우 분석 작품과 동일한 저자의 작품명이 본문 언급될 경우 괄호 안에 출판연도만 기재합니다.

⑩ 각주 번호는 1), 2), 3) 등으로 부여합니다.

4) 참고문헌

본문에 인용된 논문이나 저서만 수록합니다. 모든 참고문헌은 가다다순, ABC순, 오래된 연대순으로 배열하고, 동일저자의 단독저작와 공동저작이 동시에 포함되는 경우 단독저작을 먼저 배열합니다. 참고문헌은 국문저작을 먼저 배열하며 구체적인 기입양식은 예)와 같습니다.

① 단행본의 경우: 저자(연도),『도서명』, 출판사.

예) 이성형(1999),『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한길사.

Wiarda, Howard J.(1995), *Latin American Politics*, Belmont: Wadsworth.

Cameron, Rondo(1993), *A concise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2nd edn., Oxford: Oxford Universiry Press, 이헌대 역(1996)『간결한 세계경제사』, 법문사.

② 논문의 참고문헌 표기: 저자(연도), 제목, 저널명, 권(Vol.), 호(No.), 페이지. 한국어 논문은 「」, 외국어 논문은 “ ”를 사용합니다.

예) 최인권(2003),「라틴아메리카의 인권보장법」, 인권연구, Vol. 10, No.1, pp.33-54.

Watson, Ian(2002), “An Examination of the Zapatista Army of National Liberation(EZLN) and New Political Participation,”

Democracy and Nature, Vol.8, No.1, pp.1-50.

③ 단행본에 삽입된 논문의 참고문헌 표기: 저자(연도), 제목, in 편자, 단행본 제목, 출판장소:출판사 명, 페이지.

예) Barton, Tomas(2004), "Globalising the Zapatistas" in Maria Flores(ed.), *Changing Mexico*,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pp.96-134.

길인성(1996), "미국의 초기 공업화, 1800~60" in 김종현 편, 『공업화의 제유형(Ⅰ)』, 경문사, pp.121-170.

④ 인터넷 사이트가 참고문헌으로 사용될 경우 저자와 연도(알 수 있는 경우), 제목, 인터넷 주소 순으로 기입하고 인터넷주소 아래에는 밑줄을 칩니다.

예) Marc Denhez(1982), "Aboriginal Rights and the Sovereignty of Countries," http://www.cwis.org/fwdp/Americas/abor_sov.txt

⑤ 신문, 포럼, 세미나자료 중 정확한 날짜의 기입이 필요한 경우 참고문헌명의 마지막에 년/월/일의 순으로 표기한다. (국문, 외국어자료 모두)

예) Korea Times, 2002/03/16

5) 논문투고일자

예) 논문투고일자: 2003년 11 월 1일

6) 투고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예) 홍길동(Hong, Kil-Dong)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E-mail: hkildong@pufs.ac.kr

5. 논문 작성의 예시

논문제목(신명태명조 16p, 장평90%, 자간 -10, 가운데정렬)

(2줄 띄움)

필자이름(중고딕 12p, 장평95%, 자간 -5, 오른쪽정렬)

(1줄 띄움)

<Abstract>

La Perspectiva del Cambio Político de Cuba Vista por los

(신명조 10.5p, 진하게, 장평85%, 자간 -5, 가운데정렬)

El cambio político de Cuba se puede ocurrir por los factores

……(신명조 10p, 장평90%, 자간 -2, 줄간격 140%)

[Key Words: Cuba / Cambio Político / Sociedad Civil]

[주제어: 쿠바 / 정치변동 / 시민사회]

(2줄 띄움)

Ⅰ. 서론 (신명태고딕 12p, 장평95%, 자간 -5, 가운데정렬)

(1줄 띄움)

이 논문은 (휴먼명조 10p, 장평95%, 자간 -10, 줄간격 148%)

(1줄 띄움)

1. 중제목 (신명태명조 11p, 장평95%, 자간 -5, 왼쪽정렬)

……

(2줄 띄움)

참고문헌 (신명태고딕 12p, 장평95%, 자간 -5, 가운데정렬)

(1줄 띄움)

김기현(2004), 「미국의 대 쿠바 정책: 변화와 전망」, 라틴아메리카 연구, Vol. 17, No. 2, pp.117-144.

Bond, Theresa(2003), "The Crackdown in Cuba", *Foreign Affair*s, Vol. 82, Issue 5, Sep.-Oct., pp.118-130.

(2줄 띄움)

논문투고일자: 년 월 일
심사완료일자: 년 월 일
게재확정일자: 년 월 일

이름(영문이름)
소속
E-mail :

▣ 이베로아메리카에 기고되는 모든 원고는 A4 용지에 출력하고 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파일 형식 : 흔글 97 이상 /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Type

내부 10.5cm × 17.3cm (본문 입력 규격)

『이베로아메리카(JIIS)』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1998.11.1.
수정
2001.6.28
2002.6.22
2003.6.21
2004.9.3.
2006.3.2.
2007.4.1.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 학술논총 『이베로아메리카』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내외, 편집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제3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선출하며 연구소운영위원회에서 인가받아 임명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과 연구소운영위원회의 인가를 통해 위촉된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소장의 임기와 같다.
제6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5조 편집 위원회는 논총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원고 논문 심사 기준

및 투고 규정을 정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접수된 논문의 심사 위원을 선정 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4장 회의

제 7 조 편집위원회는 논총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심사 위원의 선정과 게재 논문 결정을 위해 논총 발간 기간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 8 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과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들에 대한 이메일 공지와 편집위원들의 답신을 통해 Off-line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장 논문 심사 기준

제1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되는데,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양식에 명시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 심사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번호	평가내용	배점
1	「이베로아메리카」 학술지에의 적합성	10점
2	논문의 체제 및 논리	25점
3	연구논문의 창의성 및 기여도	25점
4	연구방법의 타당성	20점
5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	10점
6	기타사항(국문/외국어요약, 오탈자 등)	10점
총점		100점

제6장 논문의 심사방법

제12조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주관으로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해당논문의 전공에 가장 적합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의 심사는 반드시 익명으로 한다.

제14조 논문의 심사결과는 3인의 평가등급을 취합하여 선정한다.

제15조 평가등급

A: 게재. 단, 필요시 편집상의 수정 후 게재(90-100)

B: 부분 수정 후 게재 가능 (80-89)

C: 전면수정 후 다음호 재심(0-79)

D: 게재불가

제16조 심사처리기준

1. A, A, A : 편집상의 수정, 보완 후 게재
2. A(B), A(B), B : 투고자 부분수정, 편집위원회의 추가수정 혹은 게재 여부결정
3. A, A, C: 투고자 전면 수정 후 편집위원회 심의를 통해 게재결정.
4. A(B), B, C : 편집위원회 심의 후 다음호 재심 혹은 제4심사자 의뢰. 제4심사자의 평가가 A, B인 경우 AAC에 준해 처리. C인 경우 다음 호 재심.
5. A(B,C), C, C : 다음 호 재심.
6. D: 3인의 심사자 중 1인이라도 D판정을 내린 경우 4.5.에 준해 처리하거나 게재불가판정을 내린다.

제17조 게재불가의 사유는 본 학술지의 연구 분야와 맞지 않거나 기 발표된 유사논문이 있을 경우, 그리고 표절 및 도용된 논문일 경우에 해당한다.

제7장 논문 심사 절차

제18조 저자는 논문투고신청서<양식1>를 작성하여 논문원고 화일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편집위원회로 송부한다.

제19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각 논문의 심사위원을 3인씩 선정한다. 각 논문에 대한 엄정하고 질 높은 심사를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 풀을 통해 해당학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제20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의뢰서<양식2>, 논문 심사보고서<양식3>과, 논문 1부를 송부함으로써 심사를 의뢰한다.

제21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를 논문심사보고서<양식3>에 기록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의뢰서<양식4>와 논문수정보고서<양식 5>를 저자에게 송부하여 정해진 기일 내로 수정토록 한다.

제23조 편집위원장은 최종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논문 게재채택/기각 여부, 다음호 재심사 등을 결정한다.

제24조 편집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에게 최종게재 채택여부를 통보하며, 논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한다.

제8장 학술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제 1조 학술지는 1년에 2회 발행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28일로 한다.

제 2조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한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저자는 향후 2년간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 3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해 발급한다.

제 4조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본 연구소가 공동으로 갖는다. 따라서, 게재 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 수록할 경우는 사전에 저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본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권호의 변경) 2004년 12월 28일에 발간되는 제6호 논집의 '호'를 '권'으로 변경하고, 2005년부터 제7권 제1호, 제2호로 지칭한다.

부칙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연구윤리규정의 제정과 공지) 수준 높은 논문의 수록과 학술지의 발간을 위해 연구윤리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학술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규정의 적용범위와 시행) 연구윤리규정은 모든 투고자, 심사자, 편집위원회에 적용되며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윤리규정

전 문

『이베로아메리카』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복합학 분야(한국학술진흥재단분류기준)의 학술지로서 스페인, 포르투갈어권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에 대한 학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결과물을 엄선하여 게재함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학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이 지역 간의 관계 및 우호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준 높은 연구 논문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이베로아메리카』에 학술성과물을 게재하고 공유하는 것은 본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학문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이에 각 연구자와 편집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보다 수준 높은 연구논문의 작성과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학술지를 발간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학자들뿐 만 아니라 모든 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문적 발전에도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할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이베로아메리카』에 투고되는 연구결과물을 심사, 선정, 출판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진정한 학술발전을 위해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4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 1 절 저자의 윤리규정

제1조 표절

1. (정의) 표절이란 타인이 행한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자신의 주장인 것처럼 연구결과물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표절의 금지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논문에서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인용과 사용의 횟수와 무관하게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타인의 연구결과나 주장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업적

1. (정의) 연구업적은 자신이 수행한 모든 연구결과물(저서, 논문, 기고문, 보고서 등)을 의미한다.

2. 연구업적의 인정과 책임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 모든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만 연구업적으로서 인정받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직접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있다.

3. 공동연구업적의 저자
   1) 2인 이상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모든 연구결과물인 논문 혹은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기재 순서는 각 연구자의 연구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 저자의 순서가 상대적 지위 혹은 직책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제 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3) 연구와 저술, 혹은 번역에 직접 기여한 자는 모두 공동저자(역자) 혹은 공동연구자로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4) 연구나 저술에 있어서 간접적인 기여(윤문, 연구 보조활동 등)는 각주, 서문 등을 통해 적절하게 사의를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1. (정의) 중복게재(출판)란 이미 출판된 연구물 혹은 게재예정이거나 심사중에 있는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구자는 무단으로 중복게재(출판)를 하거나 시도해서는 안된다.

3.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이 학술지에 먼저 게재된 후 해당 연구결과물을 저서로 출간하거나 저서에 포함되는 경우 반드시 게재된 바 있는 학술지의 서지정보들을 해당출판물에 밝혀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문헌의 표시

1. 인용과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것은 독자가 해당 연구의 내용이나 연구자의 주장이 선행연구의 결과인지 아니면 연구자의 독창적인 관점, 주장, 또는 해석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2. 저자는 학술지, 단행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3. 비공개 논문, 비공식 보고서, 또는 출간전인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나 혹은 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4.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얻은 자료의 경우(예; 개별 인터뷰, 논문 혹은 연구계획서 평가과정 등),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5. 타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경우, 혹은 타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주(각주, 후주)를 통해 인용인지, 혹은 참고인지의 여부를 밝힌다.

제 2 절 편집위원회의 윤리규정

제 1 조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편집위원들에게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논문의 제목과 주제어만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저자에게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 3 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 1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해야 한다.

1. 편집위원은 저자와 가능한 한 개인적인 관계가 개입되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2.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 2 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 4 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 1 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1.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 등을 바탕으로 불충분한 논문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2.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시키거나 탈락시키지 않는다.
3. 논문을 탈락시키고자 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심사보고서에 명시한다.
4. 심사자와 저자의 관점이나 해석이 상충되는 것을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제 3 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논문심사보고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2. 심사자는 논문심사보고서에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에 대한 비하나 모욕의 표현은 삼간다.

제 4 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1.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을 다른 사

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절 윤리규정에 대한 서약

제1조『이베로아메리카』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는 투고신청서의 항목 중 하나인 윤리규정준수에 대한 항목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한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연구자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2조 연구소 소속 연구자가『이베로아메리카』에 투고할 때는 비 소속연구자와 마찬가지로 투고신청서에 명시된 윤리규정준수에 대한 항목에 동의함을 표시해야 한다.

제2절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보고와 처리

제1조『이베로아메리카』에 투고된 논문에서 인지된 윤리규정에 대한 위반사항은 편집위원이나 심사자가 편집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이러한 윤리규정위반에 대한 사항이 보고될 경우 해당 연구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키고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한다.

제3조 해당 연구자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제재를 가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를 받으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와 징계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는 징계대상 연구자에 대해 논문게재 취소, 투고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사항에 대해 다른 기관과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3절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제1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니며, 연구윤리위반사항이 보고되면 연구소 편집위원장의 위촉으로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5인으로 구성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제보자, 피조사자,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이러한 면밀한 조사 후 윤리규정위반이 사실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논문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건의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도 연구윤리위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절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연구자의 권한

제1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의 신원은 윤리규정위반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제5절 연구윤리위원의 윤리

제1조 연구윤리위원은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사안에 대해 심의에 임해야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양식1> 논문투고신청서

『이베로아메리카』 논문 투고 신청서

*** 인적사항**

1. 성 명 (국문) (영문)
2. 소 속 (국문) (영문)
3. 직 위 (국문) (영문)
4. 주 소
5. 주민등록번호
6. 전 화 번 호
7. E-mail:

*** 논문관련 사항**

1. 논문제목 (국문)
   (영문/스페인어/포르투갈어)
2. 학문분야 세부분야
3. 논문 작성언어
4. 학술대회발표여부: _____ 학술대회 (일자: 장소:)
5. 공동 저작의 경우 주저자의 성명:
6. 주제어(Key Words)를 국문과 영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병기하여 5개 제시:
7. 논문 심사시 참고사항이 있으면 기술 (예: 논문 세부분야의 특이성 / 논지 전개의 비 일반성 / 논문 형식 관련 참고사항 등)

*** 투고자 점검 사항**

1.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기재된 사실이 없음. ( )
2. 본 논문은『이베로아메리카』투고 요령 및 원고 작성 요령을 준수함.( )
3. 저자명 및 논문제목을 국문과 영문(스페인어/포르투갈어)으로 반드시 표기했음. ( )
3. 100단어 내외의 국문 및 영문(스페인어/포르투갈어)요약문을 첨부하였음. ( )
4. 공동저작의 경우 처음에 표시된 저자가 주저자임. ( )
5. 게재결정이 되면 게재료를 납부함. ( )
   게재료: 전임이상 및 게재료 지원논문 20만원, 미취업 비전임 6만원

*** 연구윤리규정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1. 본 논문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 )

2. 본 논문이『이베로아메리카』에 게재되면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한 논문의 무상제공에 동의함. ( )

위와 같이『이베로아메리카』제 권 호에 논문을 투고합니다.

200 년 월 일 성명:

『이베로아메리카』편집위원장 귀하

<양식 2> 논문심사의뢰서

『이베로아메리카』논문 심사 의뢰서

_____ 선생님께

『이베로아메리카』에 투고된 아래의 논문을 선생님께 심사를 의뢰합니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 선생님의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평가의 결과를 오는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본『이베로아메리카』편집위원회의 e-mail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목			
연구 분야		심사언어	
심사의뢰기간	200 . . . ~ 200 . . .		

『이베로아메리카』편집위원장 드림

보내실 곳:『이베로아메리카』편집위원회
주소: 부산시 남구 우암동 산 55-1 이베로아메리카 연구소 (608-738)
전화: 051-640-3427 팩스: 051-640-3407
e-mail: ibero1@pufs.ac.kr (담당: 이순주 박사)

<양식 3>『이베로아메리카』논문 심사 보고서

1. 심사논문의 제목:

2. 심사자: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H.P)
   예금주 계좌번호

3. 심사결과

   A: 게재. 단, 필요시 편집상의 수정후 게재(90-100) ( )
   B: 부분 수정 후 게재 가능 (80-89) ( )
   C: 전면수정 후 다음호 재심(0-79) ( )
   D: 게재불가
   *게재불가사유(게재불가인 경우 아래의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학술지의 연구 분야와 맞지 않음( )
   - 기 발표된 유사한 논문이 있음( )
   - 표절/도용된 논문임( )
   *게재불가의 경우에도 다음의 양식에 따라 소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4.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소견

   1)『이베로아메리카』학술지에의 적합성(10점)
   가. 평가
   2) 논문의 체제 및 논리(25점)
   가. 평가
   나. 문제점 및 수정 요망 사항
   3) 연구논문의 창의성 및 기여도(25점)
   가. 평가
   나. 문제점 및 수정 요망 사항

4) 연구방법의 타당성(20점)
   가. 평가
   나. 문제점 및 수정 요망 사항
5)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10점)
   가. 평가
   나. 문제점 및 수정 요망 사항.
6) 기타 사항(10점)
   : 국문 및 외국어 논문요약, 글쓰기 방식, 오/탈자, 편집체제 등.

<양식4>『이베로아메리카』논문 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의뢰서

『이베로아메리카』편집위원회는 귀하의 논문을 심사위원에게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결과를 참조하시어 _____년 _____ 월 _____일 까지 논문을 수정하여 논문수정보고서<양식5>와 함께 본 편집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논문의 제목:

2. 심사결과

심사자	A(90-100) 편집상의 수정보완 후 게재	B(80-89) 부분 수정후 게재	C(0-79) 전면수정 후 다음호 재심
1			
2			
3			

3. 심사결과 세부 내용

* 각 심사별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소견'입니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양식5>『이베로아메리카 』논문수정보고서

본 논문제출자는『이베로아메리카』논문 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의뢰서를 참조하여 아래사항들을 수정하였습니다.

1. 심사논문의 제목:

2. 논문제출자

성명: 소속 및 직위:

3. 수정요망사항 및 수정결과
: 수정하지 않을 시에는 수정결과 난에 수정하지 않은 사유를 간략하게 서술함.

1) 논문의 체제 및 논리
가. 지적 및 수정 요망 사항
나. 수정결과
2) 연구논문의 창의성 및 기여도
가. 지적 및 수정 요망 사항
나. 수정결과
3) 연구방법의 타당성
가. 지적 및 수정 요망 사항
나. 수정결과
4)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
가. 지적 및 수정 요망 사항
나. 수정결과
5) 기타 사항
: 논문요약, 글쓰기 방식, 오/탈자, 편집체제 등.
가. 지적 및 수정 요망 사항
나. 수정결과

■ 필자소개

마 재 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이 남 섭	한일장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김 세 건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최 영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브라질)어과
김 현 균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권 미 선	경희대학교 스페인어과
배 지 완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김 경 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서 경 석	계명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임 은 숙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브라질)어과
최 금 좌	위덕대학교
송 영 복	경희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이베로아메리카 제9권 2호

2007년 12월25일 인쇄
2007년 12월30일 발행

발행인 : 김 우 성
편집인 : 편 집 위 원 회
발행처 :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인쇄처 : 세 종 문 화 사
전화 (051) 463-5898
전송 (051) 248-4880

ISSN 1229-9111 72